

제 552 호
1976.4.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비		
제 1034 호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582 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4
제 1583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개정규칙	4
○ 고	시		
제 83 호	서울도시계획 (공원, 재개발지구, 복정가구 정비지구) 지적승인	5
제 88 호	도시계획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학교, 종합의료시설) 일부변경 및 신설결정	7
제 8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및 하수도)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사	10
제 90 호	비로판매등록고시	13
제 9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4
		(이편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5
◎공 고		
제 88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공고	15
제 9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공고	16
제 91 호	화재경계지구 지정해제	16
제 92 호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실시계획 인가공고	16
◎예 규		
제 326 호	서울특별시 토지이동신고 처리요령중 개정규정	17
제 328 호	서울특별시가지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고부 시무취급요령개정	19
◎사 령		48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하점성 인

1976년 4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34 호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명칭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 설치조례"를 "서울교육원 설치조례"로 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 교직원 및 학생의 정신수련과 도서복지 학생

및 해외동포학생의 수련, 교육, 집회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하에 서울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중 "사적동 1번지 23호"를 "사적동 1번지 27호"로 한다.

제 5 조중 "교학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되,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를 "교학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 6 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및 제 6 조중 "수련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숙 식 비

구 분	식 비 (1식당)	숙 박 비 (!박당)
국 민 학 생	200	200
중 . 고 생	250	250
교 직 원	300	300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4월 28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82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9 조 (정보 1 과) ①정보 1 과에 1 계와 2 계, 3 계를 두고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정보 1 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49 조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49 조 2 (정보 2 과) ①정보 2 과에 1 계와 2 계를 두고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정보 2 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4월 28 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83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경찰서 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정보 1 과에는 1 계와 2 계를 둔다

6. 정보 2 과에는 1 계, 2 계와 외 사계를 둔다.

제 4 조 제 4 항중 "정보과" 를 "정보 1 과 및 정보 2 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3 호

서울도시계획(공원, 재개발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37 호 (76. 3. 27) 및 제 46 호 (76.4.7) 로 신설 및 일부 변경결정된 도시계획(공원, 재개발지구, 특정가구 정비지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 4.4) 와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 4. .

서울특별시장

가. 공원신설 지적승인 조서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성 동 공 원	중구 신당동	208 번지 일대	33,278	
논 현 공 원	강남구 논현동	산 73 - 4	1,876	
학 동 공 원	강남구 학동	92 - 30	1,816	
다 동 공 원	중구 다동	59-2 일대	2,878	
서 린 공 원	종로구 서린동	79 일대	1,578	

나. 공원 변경 지적 승인조서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덕산공원	시흥군, 서면, 철산, 광명, 하안리 일부		1,336,050	△ 29,000	1,306,250

다) 재개발지구 신설 및 변경결정 지적승인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장교제 6 지구	중구수포동 60 번지 일대	3,300	1,196	2,104	변경
장교제 7 지구	중구수포동 47 번지 일대	-	1,196	1,196	변경
청계천 7 가 재개발지구	중구신당동 217 번지 일대	-	19,444	19,444	신설 결정
라. 재개발지구 세분화 지적승인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무교지구	태평로 1 가 무교동일대	49,000	무교제 1 지구	무교동 69 번지 일대	1,703
			" 2	" 77	1,663
			" 3	" 59	3,270
			" 4	" 45	2,663
			" 5	" 40	1,432
			" 6	" 28	3,366
			" 7	" 1-3	1,188
			" 8	" 10	1,062
			" 9	" 12-1	1,465
			" 10	" 17	1,525
			" 11	" 20	1,940
다동지구	다동일대 남대문로 1 가 일대	59,000	다동제 1 지구	다동 9 번지 일대	1,775
			" 2	다동 39-1 번지 일대	1,940
			" 3	다동 31-1 번지 일대	1,802
			" 4	다동 49 번지 일대	1,070
			" 5	다동 52 번지 일대	911

지 구 명	위 치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적()
다동지구	다동일대		다동제6지구	다동 53번지 일대	2,060
	남대문로		" 7 "	" 170-2 "	1,082
	1가일대		" 8 "	" 165 "	1,386
			" 9 "	" 130 "	2,640
			" 10 "	" 145 "	1,147
			" 11 "	" 151 "	1,082
			" 12 "	" 156 "	1,792
			" 13 "	" 182 "	1,702
			" 14 "	" 2-1 "	1,624
			" 15 "	" 10-1 "	1,802
			" 16 "	" 67-1 "	693
			" 17 "	" 57-3 "	676
			" 18 "	" 70 "	1,577
			" 19 "	" 75 "	696
			" 20 "	" 77-1 "	865
			" 21 "	" 89-1 "	1,011
			" 22 "	" 94 "	874
			" 23 "	" 96 "	1,683
			" 24 "	" 124 "	1,307
			" 25 "	" 120 "	1,313
			" 26 "	" 108 "	1,663
			" 27 "	106	1,782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서린지구	서 린 동 종로1가	52,000	서린제1지구	서린동131번지 일대	2,476
			" 2 "	" 111-3 "	1,908
			" 3 "	" 111-1 "	1,033
			" 4 "	" 113 "	825
			" 5 "	" 129 "	934
			" 6 "	" 107-1 "	1,561
			" 7 "	" 114-2 "	1,274
			" 8 "	" 104 "	1,297
			" 9 "	" 99 "	1,571
			" 10 "	" 70 "	1,310
			" 11 "	" 57 "	1,518
			" 12 "	" 39 "	1,089
			" 13 "	" 46 "	1,356
			" 14 "	" 42-1 "	1,650
			" 15 "	" 26 "	1,898
			" 16 "	" 7 "	1,957

마. 특정가구 정비지구 변경 (일부해제) 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장교계 6지구	중구 수표동 일부지역	3,300	1,196	2,104	일부해제

◎ 서울특별시고시제 88 호

도시계획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학교, 종합의료 시설) 일부 변경 및 신설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학교, 종합의료 시설) 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신설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대통령령 제 7754 호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4.22
서울특별시장

가. 업무지구 지정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적 (㎡)	비	고
여의도지구	국회 동측	중앙상업지역 일대	944,500		

나. 주차장 정비지구 일부 변경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비	고
			당	초		
여의도지구	여의도	일대	1,487,000	증 280,000	1,767,000	

다. 학 교 결 정 조 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고등학교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9,835		
중 학교	"	" 2-1	16,529		
국민학교	"	" 1-1	11,470		
학 교	"	" 1-350 일대	24,793		

라. 종합의료 시설 결정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종합의료 시설	여의도	동측	61,000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및 하수도)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제 46 호(76.4.7)에 의거 시설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장, 녹지)과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경.4.4)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4.21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복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중로	2	142	15	1,380	동대문구 휘경동(대 3-40)	동대문구 이문동(대 3-40)	하수도 복개에
신설	소로	1	"	10	800	동대문구 휘경동 39-4	동대문구 휘경동 308-171	다른도로
신설	소로	3	"	6	330	동대문구 이문동 219-49	동대문구 석관동 58-210	
신설	소로	1	"	10	80	무교동 47-1	무교동 55-1	무교 재
신설	소로	2	"	8	75	무교동 65	무교동 36-5	개발지구
신설	소로	2	"	8	44	무교동 35-2	무교동 31-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	92	다동 22-2	다동 61	다동제개발지구
"	"	2		8	105	" 129	" 143	
"	"	2		8	107	" 109-1	" 62-2	
"	"	2		8	40	" 184-5	" 192-11	
"	"	2		8	42	" 154-1	" 153-3	
"	"	2		8	40	" 123-6	" 113	
"	"	2		8	45	" 100	" 104-1	
"	"	2		8	30	" 10-3	" 10-4	
"	"	2		8	38	" 10	" 9	
"	"	3		6	104	" 27	" 148	
"	"	3		6	35	" 123	" 182	
"	"	3		6	40	" 51-2	" 46	
"	"	3		6	11	" 66	" 99	
"	"	3		6	15	" 77-2	" 76-3	
"	"	3		5	35	" 92	" 99-2	
"	"	3		6	40	" 117	" 98-2	
"	"	5		6	47	" 139	" 149-1	
"	"	2		8	50	서린동 66	서린동 26	서린제개발지구
"	"	2		8	25	" 60	" 68	
"	"	2		8	14	" 109	" 109	
"	"	3		6	60	" 99	" 114-2	
폐지	소로	3		6	229	다동 143	다동 18-3	다동제개발지구
"	"	3		6	85	서린동 97	서린동 79	서린동제개발지구
"	"			4	87	다동 157	다동 166	다동제개발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거점	소르	1		10	700	장충체육관위	장충동산 5-1	서울성곽 주변도로
변경	"	3		6	1000	"	장충동산 5-5	
신설	"			4	660	종로구사직동 304	사직동산 1-25	
"	"			4	930	보성고교위	삼청동산 2-15	
"	"			4	1840	동대문	해화동한국신 학위	
폐지	"	3		6	50	광희동 2 가 119	신당동 229-6	

나. 광장지적승인조서

구분	번호	광 장 명	위 치	면 적
신 설		남산3호터널입구광장	중구회현동 2 가 49 일대	15,000 ㎡

다. 주차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무교동 88 일대	758	무교재개발지구
	무교동 31-21 일대	552	
"	다 동 45-1 일대	1,351	다동재개발지구
	" 165-1 일대	1,678	
	" 68 일대	1,014	
	" 123-1 일대	1,139	
"	서린동 112 일대	799	서린재개발지구
	" 39-3 일대	301	

라. 녹지지적승인조서					
구분	위 치		면적 (㎡)	비 고	
신 설	강릉체육관위 - 강릉동산 5 일대		15,500	서울성곽 주변	
"	사적동 305 - 사적동산 1-25		5,720		
"	보성중고위 - 삼청동산 2-15		5,500		
"	동대문 - 한국신학대학위		14,400		
"	광희문주변		4,200		
마. 하수도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복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3.5	813	휘경동 39-4	휘경동 307-171	
"	11.7	165	" 55-1	" 39-4	
"	8.9	465	" 39-4	" 154-7	
"	7.3	760	" 154-7	이문동 176-14	
"	3.5	333	이문동 217-49	석관동 58-210	
"	4.5	190	신림동 725-37	신림동 675	
"	4.0	471	" 675	" 655-2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0 호 비로판매등록고시 비로단속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로판매영업 등록을 하였기 고시합니다. 1976년 4월 22 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또는 교부년월일	판매자주소, 성명및판매장소재지		비로의명칭	보증분량
시할 2-2	76.4.22	1. 주소: 강남구치호동 416 성명: 이 원 호 2. 판매장소: 강남구치호동 421-4 상호: 춘해중묘사 이원호		제 5 종복합비로 (객체비로) (일명:복살)	B-4 9/10 P-4 9/10 K-3 9/10
유효기간: 1976.4.22 - 1979.4.22					

◎ 서울특별시고시제 9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86 호 (62.12.20)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4. 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

마포구염리동 148-9~128-5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서울여자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3. 사업규모 : B = 10 m

L = 14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및준공예정일 :

75.12.30 - 76.12.31

6.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 별 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

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적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마포구 염리동	150-4	대	401	150-4	대	401	마포구 염리동 150	학교법인 송산학원	

◎서울특별시고시제 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198 호 (71.4.7) 로 시설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4.27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광로		5	50-60	16,500	오간수교	상일동시계	용두동 34-9 ~ 용담동 175 (철선) 간지적고시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청기간을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6.4

서울특별시장

다 음

◎서울특별시공고제 88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외지정공고

건설부고시제 37 호 (76.3.27) 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변경결정고시된 영동추가지구 (추가)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10 조및 동법시행령제 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신

가. 사업명 : 영동추가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사업시행지 : 관악구방배동일부

다. 시행면적 : 51,900 평

라. 인가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구획정리과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

◎서울특별시공고제 9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
 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1. 지정업체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6년수출 목표액
439	신성섬유 (주)	문정국	성동성수동 2가 275-72	염색가공(綿)	1,495,750
1530	해성대프공업(주)	진명혁	영등포 북동 191	테프류	(綿) 146,000

◎서울특별시공고제 91 호
 화제경제지구 지정 해제
 화제경제지구로 지정된 다음지구는
 소방법제 46 조 1 항 규정의 화제경제지구
 지정요건이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한다.
 1976. 4. .
 서울특별시장

위 치	지 구 명
성동구마장동 220.275 번지일대	마장동 판자밀집지대 화제경제지구

◎서울특별시공고제 92 호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제 130 호 (76.6.5)
 및 제 4 호 (76.1.17) 로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공람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사업 실시계획인가
 를 신청하였던바 건설부공고제 38
 호 (76.4.22) 로 인가공고 되었
 기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다.
 2. 건설부공고 이후 본 지구내에서

경작행위는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제39조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등이 통제된다.

3.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
과 및 철호출장소에 비치하여 보
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는 할것이나 미수행자는 본공
고로 가름됨을 알려 드립니다.

1976. 4

서울특별시
시장
다 음

가. 사업명 : 양사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사업시행지 : 강남구철호동, 양사동
각일부

다. 시행면적 : 1,697,102 ㎡ (513,37평)

라. 시행기간 : 1976.4.22-1979.12.31

예 규

서울특별시 토지이동신고처리요령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명한다.

1976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승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326 호

서울특별시토지이동신고
처리요령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토지이동신고처리 요령
중 다음4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분할 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도시계획적측면의 기술적검
토 및 건축행정적 측면의 기술
적검토를 관계과와 협의한후가
아니면 지적공부에 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⑤ "대" 아닌 토지를 다용도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3필지 이
상분할하는 경우에는 도시로서
필서있는 토지이용(구획정리식
분할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
시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를 받
아 준공검사를 필하고 지적공부
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⑥ 도로(사도)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도로형태 분할포
함)은 도시계획상 가로망계획에

의한 것은 그 경계고정물에 의거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명시 측량자의 확인을 받은후에 지적공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하며 가로망계획이 없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여 분할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제법규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준 공점사물 필한후에 지적공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토지분할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토지분할의 정당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내에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적측면의 기술적검토 (토목과)

- 1) 용도지역지구별 분할규제면적의 적정여부
- 2) 간선및세도로망의 폭원, 배치 및 기존인근도로와의 연결상황
- 3) 도시계획도로및 도시계획시설과 중복여부및 상관관계

4) 지형및 인근기존주택지대와의 유기적인 조화와 균형유지로 무질서방지

5)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사도 개설및 토지형질변경등 토지개발관계의 허가사항 여부

나. 건축행정적측면의 기술적검토 (건축과)

- 1) 건축대지용도지역별면적 및 대지폭
- 2) 건축물과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적법여부
- 3) 건폐율 또는 용적율관계에 대한 적법여부
- 4) 건축물의 높이 제한관계에 대한 적법여부
- 5) 건축선지정 관계에 대한 적법여부

다. 지적측량의 기술적검토 (세무 1 과)

- 1) 경계측정에 대한 적정여부
- 2) 면적측정에 대한 적정여부
- 3) 경계고정물 설치여부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당시 지
적정리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서울특별시가지 계획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금 징수교부 사무취급
요령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7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에규제 328 호

서울특별시가지 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
업 청산금 징수교부 사무취급요령
개 정 요 령

서울특별시가지 계획사업 토지구획정
리사업 청산금 징수교부 사무 취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가지 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청산금 과징 및 교부사무취급
요령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8 조 및 서울특별시 각지구 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과
징 및 교부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징수청산금) 환지면적이 권리면
적에 비하여 증명이된 경우 증
명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징수
청산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
라 한다.
2. (교부청산금) 환지면적이 권리면
적에 비하여 감형이된 경우 감
정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교부 청
산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3. (부담금) 제비지 매각대금으
로 당해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공사비충당이 부족할때 법제 75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이

<p>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p> <p>4. (상계) 동일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2필지 이상 토지소유자가 징수금과 교부금이 동시에 병존할때 신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p> <p>5. (환불) 환지에정지일때 가청산으로 납부된 징수금을 환지확정처분시 감정으로 인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말한다.</p> <p>제 3 조 (토지평가) ① 토지평가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리후 토지평가는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의 로선가를 비친계수 합계표 점 가격산출표(제 1 호 양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2. 표준지 선정은 당해지구내에서 청산금조정의 표준이 될수 있는 지점에서 선정하며 표준지 가격은 파세시가표준액, 감정전문 기관(한국감정원등)의 감정가격 및 체비지</p>	<p>사정가격등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시점은 파세시가표준액인 경우는 청산업무개시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감정 및 체비지 사정가격은 청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것으로 한다.</p> <p>제 4 조 (청산조서) ① 청산조서 I (제 2 호양식)은 환지 처분조서 및 평가된 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다.</p> <p>② 법제 6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 이전에 가청산을 한 토지가 환지확정되어 청산조서를 작성코자 할때에 징수금이 전액납부되지 않는 경우와 징수금이 조정되지 않는 토지는 환지확정후의 청산가격으로 한다.</p> <p>③ 가징수금을 징수한 토지가 확정 이전에 분할되었을 때에는 가징수금 단가를 적용하여 청산할 수 있다.</p> <p>④ 가청산시 감명된 경우도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⑤ 가청산 되었던 토지는 청산조서 II (제 3 호 양식)에 의하여 청산</p>
--	--

<p>조시를 작성한다.</p> <p>제 5 조 (불환지 처분토지) ① 법제 52 조 및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환지 처분을 받은 토지는 사업인가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단가를 결정하고 환지확정처분후 불환지 교부금을 지불한다 다만 법제 52 조에 의한 불환지 불환지된 토지의 부근의 경우와 제비지에 거주하는자가 그 제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였을 경우 및 불환지된 토지가 증명으로 처리되어 징수금이 납부될 경우에는 환지에정지 지정시에도 불환지 교부금을 지불할 수 있다.</p> <p>② 단일필지를 환지에정지 지정시 교부교지 할 때는 제 1 항에서 규정한 인가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지불하며 당해토지에 대한 평가액이 없으면 인근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 6 조 (등기열람)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산조서에 기재된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등기열람하여 전기 조서에 기재한다.</p>	<p>제 7 조 (징수조서작성) 환지명수가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조서 (제 4 호양식) 를 작성하고 조정결의한다.</p> <p>제 8 조 (청산금 납입고지서 발송) 징수조서에에 의하여 증환지된 토지 소유자에게 납입고지서 (제 5 호양식) 및 징수청산금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등기로 발송한다. 반송된 납입고지서를 소유자 주소로 재열람 발송하여도 반송될 경우에는 물건지 주소로 발송한다.</p> <p>제 9 조 (납부기간) 징수금 납입고지서는 적어도 납기계시 5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하며 30일내지 60일의 납기를 정할수 있다. 다만 반송되어 재송달하는 고지서는 납기마감 5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납부장소) 납기내 납부는 납입고지서에 지정한 장소로 하</p>
--	---

<p>고 납기후 납부는 특별회계납부서 (제 6 호양식)에 의거 상업은행 태평로지점 (시금고)으로 한다.</p> <p>제 11 조 (공시송달) ① 제 8 조에 의하여 발송된 납입고지서가 반송되면 공시송달하여야 한다.</p> <p>② 공시송달의 방법은 시보에 게재하고 게시 공고토록 한다.</p> <p>제 12 조 (이자가산) 징수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년 12%의 이자를 가산징수한다. 다만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 착오송달, 국공유토지, 공공단체소유 토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납성산금에 대하여 이자가산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 13 조 (독촉) 징수금 납부자가 납기 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체납조서 (제 7 호양식)를 작성하고 독촉장 (제 8 호양식)은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발부한다.</p>	<p>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물건지가 상이할때는 각각 발송한다.</p> <p>제 14 조 (징수부작성) 청산금납입 고지서가 발송된 후 징수조서 (제 4 호양식)에 의하여 청산금징수부 (제 9 호양식)를 작성한다.</p> <p>제 15 조 (수납소인) 납입필 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통지즉시 징수부 (제 9 호양식)에 납부확인을 위한 소인한다</p> <p>제 16 조 (압류) 독촉기간내 체납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1개월내 등기 압류 (체납물건)하고 징수부에 압류표시와 동시에 압류대장 (제 10 호양식)에 기재한다. 다만 압류대행자가 계약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 17 조 (압류해제) ① 체납징수금 이자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해제대장 (제 11 호양식)에 기재한다.</p> <p>제 18 조 (최고) 독촉 및 압류하여도</p>
---	--

<p>징수금을 납부치 않을 때는 적어도 년 2 회 이상 최고장(제 12 호양식) 을 발부한다.</p>	<p>하여 지구별로 세입정리부(제 14 호양식)를 작성 일반 세입액을 기재정리한다.</p>
<p>제 19 조 (공매) ① 최고장을 발부 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징수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제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징수확보를 위하여 토지 이외에 그 지상물(건물 및 기타)도 압류 및 공매처분할 수 있다. ② 공매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잔적가격은 당해분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 금의 단가(이자액 포함)를 적용 할 수 있다.</p>	<p>제 23 조 (현재표) 일반 세입액에 의 한 월말세입액 총누계(관.항.국 별도)를 익월 7 일까지 현재표(제 15 호양식)를 작성·보고 한다.</p>
<p>제 20 조 (토지이용 제한) 징수금 채납 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에 대한 추락동기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 24 조 (감액 및 증액) 환지면경으 로 인하여 환지 면적에 변경이 발생할때 그 내역에 따라(기산정 원 가격에 의거)정산한다.</p>
<p>제 21 조 (일제작성) 납입통지서에 의 하여 지구별 일반 일제표(제 13 호양식)를 작성한다.</p>	<p>제 25 조 (교부) ① 교부금은 환지 확정 처분공고당시의 토지소유자에 게 지급한다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22 조 (세입정리부) 납입통지서에 의</p>	<p>② 교부금은 환지로 감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금결정통지서(제 16 호양식)의 발송이나 실문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한다. ③ 교부금 청구시에는 다음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여 정지인 경우는 내의)</p>

(나) 인감증명서 및 인감지참

(다) 주민등록표 (동기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할때)

(라) 청구서 (제 17 호양식)

④ 교부금 지불시는 각지구별로

교부금 지불대장 (제 18 호양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환지확정처분공고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현소유자가 교부금을 청구할때는 청구권자 (환지확정 공고당시)의 양도각서 (제 19 양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도)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증감명이 발생한 사도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방침에 의거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7 조 (상계) ① 동일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동일토지소유자에게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동시에 병존할때는 청산금상계신청

서 (제 20 호양식) 인감증명서 및 증감된 동기부등본 (주소가 상이할때는 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첨부)을 제출하면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 3 자가 교부금의 양도를 받았을때는 징수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③ 상계신청에 의하여 상계할때는 징수금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8 조 (환불)가청 산세 징수금을 징수하였다가 환지확정으로 감명되었을때는 청산조서에 의하여 환불한다. 환불금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제 25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부영수증을 분실 또는 토지가 제삼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는 각서 (제 21 호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과오납금) ① 과오납된

<p>징수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한다.</p> <p>다만 납부자에게 미납징수금이 있을 때는 이에 상당한후 환불한다.</p> <p>②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오납대장(제 22호양식)을 작성하고 과오납금 환불 통지서(제 23호양식) 또는 징수금 상당통지서를 과오납자에게 통지한다.</p> <p>③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제 17호양식) 납부영수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분실각서(제 21호양식)로 가류한다.</p> <p>④ 과오납환불은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 24호양식)를 교부하고 그 원부에 청구자가 영수하였다는 확인인감의 날인등을 받는다.</p> <p>제30조(과오불) 과오불된 청산금은</p>	<p>수령자로 부터 재징수하여야 한다.</p> <p>제 31조(분담금) ① 분담금을 징수코자 할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32조(계치금) ① 완지확정처분 이후 징수금이 결정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촉탁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입 석출의 현금납부서(제 26호양식)에 의하여 상업은행 대명로 지점에 예치케 할수 있으며 예치대장(제 25호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완지확정후 촉탁등기를 하고자 할때는 청산금 체납 여부를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승환지되지 않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p> <p>촉탁등기된 토지에 대한 징수금이</p>
---	---

<p>결정되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면 납기내 토지소유자가 예취금 반환 청구서(제 27 호양식)를 발부받아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통지 하여야 한다.</p>	<p>㉔ 토지불합표 인한 청산금은 환 지변경내역에 의하여 처리하여 환 지확정후 증환내역이 정리되지 않 고 분할표원액은 분할원 면적에 의하여 산정한다.</p>
<p>제33 조(승계) ① 징수금의 납부의 무는 토지소유권과 더불어 승계한 다.</p>	<p>㉕ 공유지분의 징수금은 동기부상 의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다.</p>
<p>㉖ 토지소유권의 변경이 있을때 토지소유자 당사자가 소유권등의 변경 신고시에는 변경신고서(제 28 호양식)를 제출토록 한다.</p>	<p>부 칙 1. 이 규정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이런 징수합계표점 가격 산출표

19

노선명 토	노선 번호	구 선	구 간	특 정 지 역	도로 구비	노선 방향	제 정 일	표점의면적			합 계	노 선 위 차 가	노 선 위 차 가	노 선 위 차 가	경 정 비 노 선 가 고
								지 장	학 공 면	공 면					

제 1 호 양식

서 부 과

(제 2 호 양식)

청 산 조 서

종 전 토 지			권 리 면 적 에 대 한				환 지					청 산 내 역				소 유 자		
동 명	지 번	지 목	대 장 면 적	권 리 면 적	단 가	권 리 가 격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단 가	금 액	과 도 병	감 도 병	교 부	징 수	주 소	성 명
			평	평	원	원				평	원	원	평	평				

(제 3 호 양식)

청 산 조 서

종 전 토 지 표 시			가 청 산 (예 정 지)					본 청 산 (확 정 지)							변 동 사 항				수 소	성 명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권 리 면 적	환 지	단 가	교 부 내 역	징 수 내 역	동 명	지 번	구 획 번 호	환 지 면 적	단 가	과 도 병	감 도 병	교 부 금	징 수 금	추 정 면 적			환 부 면 적	추 정 금
							평	평											평	평		

0562

(제 6 호양식) 특별회계 남부서(부)										
기분				년						
19	년도	월	분	회계	특별회계					
원	서울특별시도시경비국도시행정과									
지	구		별		지구					
과	토지구획정리비, 분담금, 청산금, 처분비, 채비지, 잡수입									
출진지										
원주소										
남부자명										
일	금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분	담	금								
채	비	지								
처분비잡수입										
계										
19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위급자인					

특별회계 남부서(형)										
기분				년						
19	년도	월	분	회계	특별회계					
원	서울특별시도시경비국도시행정과									
지	구		별		지구					
과	토지구획정리비, 분담금, 청산금, 처분비, 채비지, 잡수입									
출진지										
원주소										
남부자명										
일	금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분	담	금								
채	비	지								
처분비잡수입										
계										
19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제 552 호
 시
 보
 1976.4.28 55-29

부 별 회 계 영 수 및 분 지 서										
기분										
19	년도	월	분	도지	부 별 회 계					
최 고 지	서울특별시도시경비국도시행정과									
지 구 별	지 구									
과 목	토지구획정리비, 분담금, 청산금, 처 분비, 체비지, 잡수입.									
물 건 지										
현 주 소										
남 부 자 명										
일	금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분 청 채	담 상 비	금 금 지								
처 장	분 수	비 수 입								
계										
19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금고과 서울특별시입금출납원 귀하										

부 별 회 계 영 수 증										
기분										
19	년도	월	분	도지	부 별 회 계					
최 고 지	서울특별시도시경비국도시행정과									
지 구 별	지 구									
과 목	토지구획정리비, 분담금, 청산금, 처 분비, 체비지, 잡수입.									
물 건 지										
현 주 소										
남 부 자 명										
일	금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분 청 채	담 상 비	금 금 지								
처 장	분 수	비 수 입								
계										
19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금고과 귀급자인										

55-30 제 552 호 시 보 1976.4.28

(제 9 호양식) 청 산 금 징 수 부

종건의토지			환 지				영 수	등록사항	소유자 주 소 명
동명및 지	지 적	권 리 적	동명및 지	지 적	과도명	청산징수액			

생 인 호

청 산 금 징 수 부

종건의토지			환 지				영 수	등록사항	소유자 주 소 명
동명및 지	지 적	권 리 적	동명및 지	지 적	과도명	청산징수액			

생 인 호

<제 12 호양식>

(문의처)

최 고 장

도시 행정과 75-7927
73-4904

귀하의 채납청산금(토지구획정리비)이 아래와 같아오니 수명즉시 도시행정과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물건지	년도	수납번호	금 액	채납처분비	채납이자	비 고
					2,000	별도계산	이자계산 72.3.1~72.10.31 년 24%
							72.11.1~계후 년 12%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실 때에는 부득의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 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제 16 호양식>

시 도 행 : 197.
 수 신 :
 재 목 : 교 부 청 산 금 결 정 통 지 서

- ①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 지구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교부청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코저 하오니
 청산금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구비서류...등기부등본 1부(감정원지) 인감증명서 1부, 인감저참, 등기부와
 인감의 주소가 상이할때는 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종 건 의 토 지			권 리	환 지			별 도 명	평 당 평 가	교 부 액
동 명	지 번	지 적		구 획 번 호	동 명	지 번			

서울특별시장

* 환지 확정으로 감정될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 함.

<제 17 호양식>

청 구 서

일 금

단. 지구내 동 번지 호

본인 소유토지의 청산교부금액임

197

주 소

청 구 인

②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22 호양식>

수납번호	물건지	납부금액	과오납 이 유	납부일자		납부자	결재		
				전일자	후일자		계	계장	과장

<제 23 호양식>

서울특별시

서도행 : 196

수신 :

제목 : 청산금 과오납금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을 다음과 같이 환부하겠으니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지참

기

환지확정지			청산결제액	기납부액	과오납금액	차액	비고
등명	지번	지목					

서울특별시장

<p>경상남도수출진흥위원회</p>		<p>수액</p>
<p>의결</p>		<p>수액</p>
<p>일급</p>		
<p>단</p>		
<p>상기 규약은 본령령</p>		
<p>지침인의 자정위원회</p>		
<p>197 년 월 일</p>		
<p>서울특별시</p>		
<p>자</p>		
<p>경상남도수출진흥위원회 김수관 수관장</p>		<p>②</p>
<p>사무처장</p>		

<p>경상남도수출진흥위원회</p>		<p>수액</p>
<p>의결</p>		<p>수액</p>
<p>일급</p>		
<p>단</p>		
<p>상기 규약의 자정위원</p>		
<p>반환 명령을 받음함</p>		
<p>197 년 월 일</p>		
<p>서울특별시</p>		
<p>자</p>		
<p>경상남도수출진흥위원회 김수관 수관장</p>		<p>①</p>
<p>사무처장</p>		

<p>경상남도수출진흥위원회</p>		<p>수액</p>
<p>의결</p>		<p>수액</p>
<p>일급</p>		
<p>단</p>		
<p>197 년 월 일</p>		
<p>197 년 월 일</p>		
<p>김수관 수관장</p>		<p>작성자</p>
<p>관</p>		<p>부</p>
<p>관</p>		<p>장</p>

(제 24 호 양식)

부

서울특별시수출진흥위원회

경상남도수출진흥위원회

0568

100

(제 25 호 양식)

지구명	지번	종경	면적(㎡)	매 주 자		매 주 인자	권 재		확 권 사	권	
				주	성 명		담	상		자	상

55-42 제 552 호 시 보 1976.4.28

(제 26 호 양식)

개인세출의권금납부서

납부서			위탁서			납입불지서				영수증		
계호	년도	내역	계호	년도	내역	계호	년도	내역	계호	년도	내역	내역
개인세출의권금			개인세출의권금			개인세출의권금				개인세출의권금		
금			금			금				금		
정리구분			정리구분			정리구분				정리구분		
전명			전명			전명				전명		
권금			권금			권금				권금		
상기와 같이 납부함.			상기와 같이 위탁함.			납부자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 기 불지함.				년 월 일		
납부자주소			개인세출의권금출납원			년 월 일				금 고		
성명			①			금 고				납입자주소 :		
금 고			②			(개인세출의권금출납원)				성명 :		
(개인세출의권금출납원)			귀하			귀하				납부자 귀하		
도시행정과장			정리과장			과장				출납원		
						취급자기장						

금고귀하

0569

제 552 호

시

보

1976.4.28

55-43

55-44 제 552 호 시 보 1976.4.28

(자 - 호 양식)

반 환 청 구 서

계 호 년도

세입세출의현금

금

정리구분

건 명

내역

현금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인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귀하

담 당 자	정리 2계장	년월일제
		년월일제

반 환 청 구 의 회 서

계 호 년도

세입세출의현금

금

정리구분

건 명

내역

현금

남부자주소

성 명

상기와 같이 청구의회 합니다.

년 월 일

도시행정과장 인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귀하

반 환 통 지 서 및 영 수 증

계 호 년도

세입세출의현금

금

정리구분

건 명

내역

현금

남부자주소

성 명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말

년 월 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 인

금 고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주소

성 명 인

금 고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귀하

소유권 변경 신고서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지구 제

구획내

본인 소유권 토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구분	소유권 표시				변경원인	비고
	물건소재지	면적	주소	성명		
변경후						
변경전						

서기 197 년 월 일

양수자 주소

성명

인

양도자 주소

성명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

- ※주 1. 변경원인란에는 소유권의 이전분할로 인한 변경일때는 "이전
"분할"이라 표시하고 변경년월일도 기입하실것.
2. 바고란에는 분할필부 "벗필"이라고 변경전란에 표시한다.
3. 2필지이상 분할일때는 권리별로 매장 작성하여 신고한다.
4. 연서가 곤란할 때에는 변경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소유자 주소의 변경이 있을때에도 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사 령

○ 1976.4.23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건대식
 세무조사과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사 김윤환
 세무조사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 문준호
 행정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새마을
 청년회) 지방행정사 신두봉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행정과 지방행정사 김명현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사 김치근
 조경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정보 점희용
 총무과 근무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정보 이병동
 운영과 근무를 명함.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정보 김근용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정보 박신원
 운수1과 근무를 명함.

강남구 지방행정정보 박중용
 시민과 근무를 명함.

도시정비과 지방행정정보 정영욱
 관제과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정보 권항용
 관광과 근무를 명함.

강남구 지방행정사 임종운
 세무조사과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정보 건경욱
 상정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정보 권대경
 도시계획과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정보 좌중울
 운수3과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정보 차일환
 급수과 근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행정정보 남찬희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행정정보 이주영
 행정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조사부 김순초
 행정과 근무를 명함.

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주사보	지용갑	황선문
종로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행정과	지방행정 주사	윤권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김수만
용산구	지방행정 주사보	정차환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권영삼	김은희
강남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마포구	지방행정 주사	남영주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한상인
양정과	지방행정 사무원	김일환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	홍성수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보	강충방	성명모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우계호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도로시설과	지방토목 기사보	최홍순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고갑수
○ 1976.4.24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급수과	지방토목 기사	고송서	성동구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옥함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김관중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전충연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서부진설 근무를 명함.
			김영근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p>박문수</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원상윤</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p>권홍기</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p>	<p>박진동</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역광사업소 근무를 명함.</p>
<p>박한성</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황연진</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박재국</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김중재</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p>
<p>김인곤</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p>조태중</p> <p>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건축지도과 근무를 명함.</p>
<p>한계옥</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박일수</p> <p>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조자연</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최병인</p> <p>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주택관리과 근무를 명함.</p>
<p>김기곤</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부건설 근무를 명함.</p>	<p>이경구</p> <p>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임규성</p> <p>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조성재</p> <p>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도시정비과 근무를 명함.</p>

이윤학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홍현한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김낙원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김용환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김정근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김철근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송운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김계수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전경치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최장환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김용식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시밀회관 근무를 명함.	문상철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김경덕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한범석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윤계현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이원석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이치승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송기성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도시정비과 근무를 명함.
최중선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하우석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북악구 근무를 명함.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 중 우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배 동 석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양 주 환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이 국 영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점 태 선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박 영 삼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우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조 제 호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성북 근무를 명함.	표 수 열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점 해 탁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박 춘 배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전 상 익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이 인 천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김 명 신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점 배 용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하 갑 석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이 중 한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 재 영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주 대 길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박 규 선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 상 구

이종완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이영수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명함
김창국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최명홍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장수진	지방건축지원보시보에 임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김태거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현준	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임함.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정현중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구희수원지 근무를 명함.
문호준	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명함	정현중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황병갑	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부위생사업소 근무를명함.	이동건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김길상	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명함.	안길찬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박상환	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임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박병수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계동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조덕래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박용철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명함	전영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송재석	지방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업과 근무를 명함.	장흥숙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허경호	지방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오정선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대현산배수지 근무를 명함.	임형수	지방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환경과 근무를 명함.	신경호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소선형	지방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정건수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기전과 근무를 명함.	오선근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형태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전영성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북부위생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강욱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최병순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현배
지련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종합중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맹종인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이경환
지방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남기운	지방전기지원보시보(2선)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장호용
지방화공기 사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정우규	지방전기지원보시보(별리)에 임함.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취순

<p>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노량진수원지 근무를 명함.</p>	<p>박지찬</p>	<p>이희경</p>
<p>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이왕식</p>	<p>정명옥</p>
<p>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박성우</p>	<p>강은희</p>
<p>지방축산지원보시보에 임함. 축산물위생검사소 근무를 명함</p>	<p>김남면</p>	<p>백상자</p>
<p>지방축산지원보시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p>	<p>한명희</p>	<p>최상애</p>
<p>지방통신키팀지원보시보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p>	<p>조영호</p>	<p>정혜선</p>
<p>지방지적기사보시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p>	<p>이희명</p>	<p>김수길</p>
<p>지방농림지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강동현</p>	<p>장성복</p>
<p>지방농림지원보시보에 임함. 농축과 근무를 명함.</p>	<p>김광수</p>	<p>현명숙</p>
<p>지방농림지원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김상한</p>	<p>오전목</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점신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화공지원보시보에 임함. 노량진수원지 근무를 명함.</p>

<p>○ 1964.4.26</p> <p>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주사보 황광용 ;</p> <p>주택개발과 지방행정 주사보 조수호</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용 산 구 행정주사보 박용만</p> <p>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통계담당관 지방행정 서 강제호</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도 봉 구 행정서기 김가영</p> <p>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p>	<p>○ 1976.4.29</p> <p> 공채합격자 나종용</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초임호봉에 급함.</p> <p>법무담당관 근무를 명함.</p>
<p>○ 1976.4.27</p> <p>성 동 구 지방건축 기 사 이진상</p> <p>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 공채합격자 권영명</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7 호봉을 급함.</p> <p>법무담당관 근무를 명함.</p>
<p> 북부위생처리장 지방전지 기 원 김중완</p> <p>부직을 명함. 4 호봉을 급함.</p> <p>관리동 배수지사무소 근무를 명함.</p>	<p>연 로 과 지방전기 기 사 김성겸</p> <p>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p>
<p>○ 1976.4.28</p> <p> 천호출장소 지방토목 기 과 김영식</p> <p> 주택건설 지방건축 사 업 소 기 안충희</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하 수 과 지방토목 기 사 보 이범우</p> <p>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p> <p>시 설 과 지방토목 기 사 이수복</p> <p>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p> <p>영 선 과 지방건축 기 사 보 이광준</p> <p>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p>

기 전 과 연로과 근무를	지방전기 기사보 명함.	박길부	성 동 구 - 지방농림 기 사 유금종
상 동 구 기전과 근무를	지방전기 기원보시보 명함.	노무현	감사담당관 파견 (76.5.1~ 76.8.1)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